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8,877,000	12,866,310
일반회계		406,800,000	12,204,000
특별회계		22,077,000	662,310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2,077,000	662,310
	수질개선특별회계	2,168,000	65,0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6,000	60,18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33,000	18,9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26,000	42,7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50,000	10,5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144,000	184,320
	치수사업특별회계	9,317,000	279,510
	기반시설특별회계	33,000	9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19,78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